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세무총국의 고급화장품 소비세 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** 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66호  <재정부, 국가세무총국의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>(재세[2016]103호)에 근거 하여 고급화장품 소비세 징수관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 1. <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납세신고서 유관문제 조정에 관한 공고>(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제72호) 첨부2<기타 과세소비품 소비세 납세신고서> 작성설명 중 “화장품”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, 조정 후의 양식 및 작성설명은 첨부를 참조한다.  2. 2016년 10월 1일부터, 고급화장품 소비세 납세자(이하 “납세자”라 약칭)가 해외구매, 수입과 위탁가공으로 회수한 고급화장품을 원료로 하여 계속 고급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고급화장품 소비세 과세세액 중 해외구매, 수입 및 위탁가공으로 회수한 고급화장품 기 납부 소비세를 공제하기로 허가한다.  3. 납세자는 해외구매, 수입과 위탁가공으로 회수한 이미 세금이 부과된 화장품을 고급화장품 생산용도로 사용할 경우 2016년 10월 1일 전 발급한 공제증빙을 취득하여, 2016년 11월 30일 전 기존 화장품 소비세 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공제하여 계상하고,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.  4. 납세자는 <국가세무총국의 <소비세정책 징수관리규정의 조정과 개선>배포에 관한 통지>(국세발[2006]49호)규정에 따라 고급화장품 소비세 공제세액대장을 만들어야 한다.  5. 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. <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납세신고서 유관문제 조정에 관한 공고>(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72호)첨부2는 동시에 폐지한다. 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.  첨부: 기타 과세소비품 소비세 납세신고서  <http://hd.chinatax.gov.cn/guoshui/action/ShowAppend.do?id=15197>  국가세무총국  2016년10월19일 |  | **国家税务总局关于高档化妆品消费税征收管理事项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66号  根据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化妆品消费税政策的通知》（财税〔2016〕103号），现将高档化妆品消费税征收管理事项公告如下：  　　一、调整《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消费税纳税申报表有关问题的公告》（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72号）附件2《其他应税消费品消费税纳税申报表》填写说明中“化妆品”相关内容，调整后的表式及填写说明见附件。  　　二、自2016年10月1日起，高档化妆品消费税纳税人（以下简称“纳税人”）以外购、进口和委托加工收回的高档化妆品为原料继续生产高档化妆品，准予从高档化妆品消费税应纳税额中扣除外购、进口和委托加工收回的高档化妆品已纳消费税税款。  　　三、纳税人外购、进口和委托加工收回已税化妆品用于生产高档化妆品的，其取得2016年10月1日前开具的抵扣凭证，应于2016年11月30日前按原化妆品消费税税率计提待抵扣消费税，逾期不得计提。  　　四、纳税人应按《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〈调整和完善消费税政策征收管理规定〉的通知》（国税发〔2006〕49号）规定，设立高档化妆品消费税抵扣税款台账。  　　五、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。《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消费税纳税申报表有关问题的公告》（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72号）附件2同时废止。  　　特此公告。  　　附件：其他应税消费品消费税纳税申报表  <http://hd.chinatax.gov.cn/guoshui/action/ShowAppend.do?id=15197>  国家税务总局  2016年10月19日 |